

##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부서”란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4조제1항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가상자산 보유 제한)** 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별표1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과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상급 감독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 ③ 제한 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가상자산의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가상자산 보유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날(가상자산 보유제한제도 시행 후 최초 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상속

등 개시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내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제한 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유사항의 확인)**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그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거래사실확인서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보완 또는 제출하거나 소명하여야 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상속, 증여, 유증 등에 의한 보유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1개월 이내 가상자산의 자진매각 요구
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 재배치, 전보
3.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신규임용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한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진매각 요구에 대해 해당 조치를 취하고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한대상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거래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감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제한대상자는 보유내역을 분기별로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각이 가능해지면 이를 즉시 매각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가상자산 보유 여부의 조사)** ① 감사담당관은 연 1회 또는 필요시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및 가상자산 거래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사담당관이 따로 정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또는 제한대상자 등에 대하여 가상자산 보유내역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에 위반하여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2.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
3. 제한대상자가 조사 등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4. ‘제한대상자 등’이 제7조의 자진매각 요구 등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② 감사담당관은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가상자산의 신고 또는 제출 내용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가상자산의 신고 또는 제출 내용 및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자는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교육 등)** ① 감사담당관은 제한부서 및 제한 가상자산의 범위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제한대상자가 사전에 소속 부서가 가상자산 보유제한 부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또는 안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담당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가상자산 보유 제한 부서 및 제한 직위(제3조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 부서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위
<p>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은행과, 금융혁신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제도운영과, 가상자산검사과,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 심사분석1과, 심사분석2과, 심사분석3과</p>	<p>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산업국장, 자본시장국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정보분석원장,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분석심의회 위원</p>



##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소유자별로 금액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
3. '거래소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의 경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하목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등 특된 정식 명칭을 적으십시오.
    - 외국 거래소의 경우 외국 거래소의 정식 명칭을 적으십시오.
  - 개인 간 교환·매매 등의 경우
    - 개인 간 교환·매매 등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상대방의 성명과 취득·상실일자, 거래 금액, 교환 매물 등을 적으십시오.
    - 기업 등의 에어드랍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배분주체(거래소·기업 등)의 명칭과 취득일자 등을 적으십시오.
    - 이 외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매매·교환·이전 등의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보유 경위를 적으십시오.
4. '가상자산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 및 개인이 거래한 가상자산의 정식 명칭을 적으십시오.
    - 가상자산예치금(가상자산 외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 예치하고 있는 원화 등 법정화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상자산 항목에 '가상자산예치금'으로 등록하십시오.
    - \* 외국 거래소의 가상자산예치금의 경우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기재
5. '심볼'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의 심볼명을 적으십시오.
  - 심볼명이 고시되지 않은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심볼명을 적고 비교란에 해당 사유를 적으십시오.
6. '종목코드'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의 종목코드를 적으십시오.
  - 종목코드가 고시되지 않은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종목코드를 적고 비교란에 해당 사유를 적으십시오. 기타 사유로 종목코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타로 입력 후 비교란에 해당 사유를 적으십시오.
7. '가격'란 작성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그 밖의 가상자산 :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8. '가액'란은 현 수량에 산정가격을 곱하여 적으십시오.
9.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매입일 등
10.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11. 취득사유 : 보유제한부서 지정 등 사유에도 취득하게 된 사유 등

##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 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부서		
	직위(직급)		
	전화번호		
신고사항			
조치내역			
기타 참고사항			
			확인 점검일
			확인 점검자 (서명 또는 인)